

제 17 장 협력

제 17.1 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이 협정의 결과를 최적화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양 당사국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 및 이용 제고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른 형태의 양자 협력과 상승효과를 발생시킨다.
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목표로 하는 협력 이니셔티브에 특히 주목하기로 합의한다.

가.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

나. 중소기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

다. 이 협정의 이행과 이용 제고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라. 이 협정의 다른 장에서 확인된 협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제 17.2 조 방법 및 수단

1. 양 당사국 간 협력은 협력 관계의 수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기존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도구, 자원 및 메커니즘으로 이행될 것이다.
2. 특히, 양 당사국은 사업의 선별, 개발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 기술 지원 그리고 특히 3자 간 협력을 포함하는 상환·비상환 재정적 협력과 같은 수단 및 세부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7.3 조 농업 협력

양 당사국은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특히

가. 플랜테이션 작물에 관한 농업연구를 비롯하여, 특히 소규모 농업 개발, 농업용 수자원의 보존 및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및 우수농업관행의 적용 등을 포함하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의 구축을 증진한다.

나. 양 당사국 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다. 축산물 및 농업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도 생산자, 기술자 및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 17.4 조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직접 소비를 증대할 목적으로 종자의 개발 및 수생생물 어업 및 양식 종의 가공을 위한 연구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나. 책임 있는 어업이라는 접근 방식에 따라 정보교환 및 천연자원의 보전을 촉진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가.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을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것

나. 식량안보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수산 및 양식 자원의 소비와 더불어 인간의 직접 소비를 위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증진하는 것

다. 불법·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는 것

라. 양식업 분야에서 호혜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

마. 수산업, 양식업 및 어업 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 목적상, 양 당사국의 해당 기관은 적절한 접촉선을 설치할 것이다.

- 바. 수산협력약정¹을 통해,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 당사국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증진하는 것
- 사. 양 당사국 간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 증진을 위해 공무원, 과학자, 기술자 및 연수생을 교환하는 것
- 아. 공동으로 조직된 과정, 방문, 세미나 및 워크숍에의 참여를 통해 양 당사국의 국가공무원과 수산업 및 양식업계 구성원의 훈련을 증진하는 것
- 자.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간 파트너십 및 교류 구축, 그리고
-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 17.5 조 임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임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활동에서의 협력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 가. 관련 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이행
 - 나. 산림자원의 관리·개발 및 이용
 - 다. 산불 및 병충해 방지 및 통제를 포함한 산림보호
 - 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공동조치 증진
 - 마. 조림 및 목재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
 - 바. 임산물의 가공과 공급 및 무역
 - 사. 친환경임업 기술 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전
 - 아. 연구·개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¹ 수산협력약정은 특히, 수산자원, 수생생물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의 무역원활화 및 연구 증진에 관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자.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 17.6 조 해상 운송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가. 해상 운송, 항만 기술 및 물류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설치
- 나. 항만 운영 · 관리 및 항만 기술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적 협력 마련
- 다. 상선 학생들의 훈련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 라. 해상교통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활동 마련

제 17.7 조 정보 및 통신기술 협력

1. 양 당사국은, 국내적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 · 통신기술(이하 "ICT"라 한다) 및 I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 관행이 민간 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이 ICT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 ICT 및 ICT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정책 사안에 대한 대화 증진
 - 나.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 증진
 - 다. ICT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제고, 그리고
 - 라.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 가. 전자정부에 관한 사이버 기반시설 및 정책 사안

- 나. 공개 키 기반 구조의 상호 운용성
- 다.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처리, 관리, 유통 및 무역
- 라.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과학·기술 협력
- 마. 정보기술단지의 연구·개발 및 관리
- 바.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개발
- 사.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네트워크와 통신의 연구·개발 및 배치
 - 아. 국제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 자.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그리고
 -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 17.8 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원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상류부분 활동
 - 나. 원유 정제, 석유화학 공정, 가스의 액화 그리고 가스·원유 및 석유 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하류부분 활동
 - 다.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생산, 제련, 정제, 가공,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활동
 - 라. 광업 활동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측량, 채굴, 환경 및 지질학적 활동에 적용되는 지도 제작 활동(측지학, 위성사진, 원격 감지 및 지리정보 시스템)
 - 마. 광업 관련 환경적 책임의 복원을 위한 광업 기술의 교환

바. 광업에 있어서 환경적 문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사. 양 당사국 간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에 대한 사업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3.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 다음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공개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가. 국내 및 외국 기업을 위한 투자 현황 자료

나. 입찰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 기회

다. 지질 자료/정보

라.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마. 광해방지기술 및 광산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와 지역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

4. 각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이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5. 1994 년도 GATT 제 11 조와 제 20 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수출이나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가. 금지 또는 제한의 도입에 앞서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하는 동시에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6. 양 당사국은

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통해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한다.

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양자관계를 위해, 각 당사국의 규정을 인정하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투자를 포함해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다. 협정 및 이미 조직된 협력체와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한다.

7. 양 당사국은 연구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며 공동 포럼, 세미나, 학술 토론회, 학회,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을 증진한다.

제 17.9 조 중소기업 협력

양 당사국은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협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생산망을 개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개발하는 것

나. 상호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무역, 투자 및 중소기업의 가능한 최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경제 주체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의무적 절차, 무역 진흥 네트워크에의 향상된 접근, 비즈니스 포럼, 사업 협력 수단에 대한 정보 및 중소기업 수출자를 위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의 교환 및 대화를 촉진하는 것

라.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수출자를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는 것

마. 중소기업에 특히 초점을 둔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공기관 간 경험의 교환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바. 환경 관리, ICT,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생가능 에너지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대상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

제 17.10 조 산업 및 상업 협력

양 당사국은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산업 협력 공동 위원회*를 통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무역, 투자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 가.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 나. 화장품 및 세면용품
- 다. 섬유, 의류, 디자인 및 패션
- 라. 전기, 그리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마.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 바. 의료 관광, 그리고
- 사. 가전 제품

제 17.11 조 과학·기술 협력

1. 양 당사국은, 양국 각각의 경제에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활동에서의 협력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 가. 필요한 경우, 설비 공유, 비밀이 아닌 과학·기술자료의 교환 및 제공, 그리고 가능한 경우 과학 표본의 교환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개발 및 고등교육
-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 다. 해당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포함해, 세미나, 학술토론회, 학회 및 그 밖의 과학·기술 관련 회의의 공동 주최
- 라.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기존의 국가 계획 또는 정책에 따른 공동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증진
- 마. 과학·기술과 관련된 관행, 정책,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
- 바. 공동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 협력

3.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첨단 과학 또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가. 생명공학(생물정보학 포함)

나. 나노기술

다. 극소전자공학

라. 신소재

마. 전자정부

바. 제조기술

사. ICT

아. 환경기술, 그리고

자.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시스템

제 17.12 조 관광 협력

양 당사국은 관광이 그들 간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가.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방문자 증가를 위해 관광 개발 및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 모색

나. 양 당사국의 웹사이트 간 연결 및 네트워크 구축 고려

다.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이 관광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

라.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 간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에 있어서의 협력

마. 양 당사국 영역에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바.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 홍보자료,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그리고

사.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

제 17.13 조 문화 협력

1.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문화 협력을 위해 이미 발효중인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존중한다.
2.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 당사국 간 문화적·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을 고려하고 교섭하는 데 동의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공동제작협정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 교섭될 것이며, 그것은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며, 콜롬비아의 경우 *문화부 (Ministerio de Cultura)*이다.
4. 제3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에서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5. 양 당사국은 양국 각각의 법령과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서의 자국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주변 환경 및 문화 경관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 관행의 교환을 장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양국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거래를 확인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며,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할 것을 약속한다.

제 17.14 조 협력의 확인·개발·후속 조치 및 점검 이니셔티브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상 혜택의 최적 집행 및 이용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이행되는 협력 활동의 후속 조치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2. 이 장의 이행을 위해 다음의 접촉선이 지정된다.

가. 한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통상산업관광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3. 접촉선은 다음을 담당한다.

가. 양 당사국이 제시하는 사업 제안의 접수와 전달

나. 사업 상황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

다. 사업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

라. 무역과 관련된 협력 이니셔티브의 이행 경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임무

4. 접촉선은 정기적으로 이 장의 이행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간 조율기관으로서 활동한다.